

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라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
동의안을 공고합니다.

전북특별자치도지사

2026년 9월 29일

동의안 명	소관부서 (담당자)
전북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	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(김두리, 063-280-4683)

※ 문의처 :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북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87
--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9. .

제 출 자 : 전북특별자치도지사
(건강증진과장)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역보건법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이 2026.12.31.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예정으로,

나.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시·군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능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인 전북대학교에 재계약하고자 「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위탁사무 : 전북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
- 위탁기간 : 2027. 1월 ~ 2031. 12월 (5년간)
- 사업비 : 71백만원(국비 50%, 도비 50%) * '27년 국비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
- 운영인력 : 2명 【단장 1(비상근), 전문인력 1】
- 시설위치 : 전북대학교(수탁기관 제공)

나. 사업내용

-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방향 및 기술지원
-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인력 역량강화 및 정보제공
- 시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기술·평가·교육·홍보 지원
- 지역사회 인식수준 개선 교육·홍보 사업 등

다. 민간위탁 필요성

-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시·군 사업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능력 강화,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서 전문성 확보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전북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민간위탁 추진 계획 : 붙임 1

나. 관계 법령 : 붙임2

-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2항
- 「지역보건법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

붙임 1 전북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민간위탁 추진계획안

1 위탁추진 기본계획

□ 사업목적

- 고령화로 인한 노인 환자의 증가에 따른 고혈압,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시·군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능력 강화

□ 사업개요

- 법적근거
 - 「지역보건법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
- 사업기간 : 2027. 1. ~ 2031. 12.(5년간)
- 사업비 : 71백만원(국비 50%, 도비 50%) * '27년 국비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
- 지원범위 :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·사업비
- 운영방법 : 보건·의료 분야 대학 및 관련기관에 위탁운영
- 위탁운영기관 : 재계약

□ 위탁사유

-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시·군 사업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능력 강화,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 조직으로서 전문성 확보 필요

□ 연도별 위탁비용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별	위탁금	예산과목	세부 내역
2024년	76 (국 38, 도 38)	민간위탁금	운영비 34.8, 사업비 41.6
2025년	69 (국 34.7, 도 34.7)	민간위탁금	운영비 37.8, 사업비 31.6
2026년	69 (국 34.7, 도 34.7)	민간위탁금	운영비 33.8, 사업비 35.6

□ 추진상황 및 계획

-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수립 : '26. 9월
-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및 적정성 심의 : '26. 9월
- 민간위탁(재계약) 의회동의안 의결 : '26. 10월
-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: '26. 11월
- 위탁기관 선정 및 위·수탁 협약 체결 : '26. 12월
- 위탁기관 운영 : '27. 1월~

2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

※ '26. 9월말 기준

○ 시·군 보건소 성과관리

- 시·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에 대한 검토·평가와 자문·환류를 통해 체계적인 성과관리 지원
- 실적 : 2025년 사업('25년 실적) 평가 상위 기관(3개소) 도지사 표창 수여, 2026년 사업('26년 실적)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(12월 예정)

○ 시·군 보건소 기술지원

- 시·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모니터링, 컨설팅, 간담회 등을 통한 사업 운영 지원
- 실적 : 통계집 발간 100권, 시군 간담회 1회, 15개 시·군 보건소 모니터링 및 컨설팅(10월 예정), 진안군 고혈압·당뇨병 등록센터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(10월 예정)

○ 시·군 보건소 교육지원

- 자체 및 유관기관 연계 교육 운영을 통한 시·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
- 실적 : 심뇌혈관질환 기초이론교육 1회,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연계교육 2회

○ 홍보사업

- 대중매체 홍보 및 시군 보건소를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홍보물 제작·배부로 사업 홍보 활성화
- 실적 : 대중매체 홍보(라디오) 1개월, 홍보물 4종 제작·배부, 현장 캠페인 3회 도·14개 시군 합동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합동캠페인(9월)

· 홍보물 제작·배부 4종

- 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생활수칙 및 뇌졸중 부채 13,400개
- ②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현수막 15장
- ③ 자기혈관 숫자알기 장바구니 200개
- ④ 자기혈관 숫자알기 우양산 80개
- 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달력 제작·배부(12월 예정)

· 현장 캠페인

- ① 비만예방 캠페인 '26. 5. 8. 14:00~16:00/전주역
- ② 도민 건강증진 캠페인 '26. 5. 15. 13:30~16:00/전북특별자치도청
- ③ 예방관리주간 합동캠페인 '26. 9. 16. 14:00~16:00/풍남문 광장

○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,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

-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,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, 국민건강보험공단,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의 기관장·담당자, 그 외 지역사회
- 실적 :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협의체 회의 3회, 지역 고혈압·당뇨병 등록센터 회의 3회(12월 각 1회 추가 실시 예정)

○ 대외 수상실적

- 「2023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」 유공 표창(보건복지부장관상, '23년 수상)

3 성과평가결과

□ 평가결과

연 도	공통지표	성과지표	합 계	등 급
2025년 (‘24년 추진사업)	24.93	65.65	90.58	S
2026년 (‘25년 추진사업)	26.80	64.10	90.90	나

□ 총 평

- (‘25년) 종합점수 90.58점으로 S등급(탁월)을 획득하였으며,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, 교육·홍보, 사업담당자 역량강화 및 보건소 모니터링 등 주요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는 등 사업 운영의 우수성이 확인됨.
- (‘26년) 종합점수 90.90점으로 나등급을 획득하였으며, 주요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고 내부 관리체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수행 역량이 확인됨. 다만, 실무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·홍보 사업의 실질적 효과 분석, 평가결과 환류체계 구축 등 일부 개선사항이 제시되어 향후 사업의 질적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함.

4

정산결과

(단위:백만원)

연 도	예 산 액			집 행 액			집행잔액		
	계	국비	도비	계	국비	도비	계	국비	도비
2024년	76	38	38	76	38	38	0	0	0
2025년	69	34.7	34.7	69	34.7	34.7	0	0	0

5

지도점검 및 감사결과

□ 2024년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

- 점검일자 : 2024. 5. 27.(월)
- 점 검 자 : 건강정책팀 2명
- 점검내용 : 복무 및 회계 관리, 위원회 운영,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
- 점검결과 : 관련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이사항 발견 못함

□ 2025년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

- 점검일자 : 2025. 7. 22.(화)/12. 12.(금)
- 점 검 자 : 건강정책팀 2명
- 점검내용 : 복무 및 회계 관리, 위원회 운영,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
- 점검결과 : 관련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이사항 발견 못함

□ 2026년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

- 점검일자 : 2025. 7. 7.(화)
- 점 검 자 : 건강정책팀 2명
- 점검내용 : 예산집행, 복무 및 인사관리, 협약내용 이행, 위탁사무 전반
- 점검결과 : 위·수탁 운영 협약서에 따른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특이사항 발견 못함

□ 「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 제4조

- 「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(재위탁·재계약 포함)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역보건법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

- 「지역보건법」 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 의료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하거나,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,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(實費)를 보조할 수 있다.
 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-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 의료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
 2.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
 3.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
 4.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, 실험 또는 검사 업무
 5.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
-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.
-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, 실비보조,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행하게 한다.